

자동차 직권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

-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에 대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 제13조제3항제6호에 따라 직권 말소등록 하고자 예고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
- 예고기간 내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이 없거나 압류 등 담보권 실행을 위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, 해당 차량은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.

1. 공고기간: 2026. 5. 19.(화) ~ 2026. 6. 2.(화), 15일간

2. 말소예정일: 2026. 6. 23.(화)

3. 공고대상

차량번호	자동차 소유자			말소사유
	성명	생년월일	사용본거지	
21주7360	김*욱 백*자	1965.05.05. 1944.10.20.	부산광역시 영도구	의무보험 장기미가입

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(☎051-290-543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6. 5. 19.

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